

창원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나526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16.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0422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체결한 증여계약을 25,456,3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456,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체결한 증여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2. 1.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2. 1.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2. 2. 16.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22. 2. 1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523호 판결로 확정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2021. 4. 20. 확정,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C는 2010. 5. 4. D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조합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0. 5. 4. 제24389호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 3. 5. 접수 제11265호로 2021. 3.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21. 3. 5.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0,043,638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달 26일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증여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49,532,000원의 은행 대출채무와 E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3.경 시세는 9,1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021. 3.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52,506,849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C의 적극재산

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는 45,500,000원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31,7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이 31,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가 임의로 신고한 가액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가액은 피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채권자 E, 창원세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각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¹⁾.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의 소극재산

반면 C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무, E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액수만 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을 초과한다.

4) 소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C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C의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여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021. 3.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021. 3.경 당시 9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원고와 피고도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9,100만 원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20,043,638원임을 앞서 본 바와 같다. 5)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은 25,456,362원[91,000,000원×(1/2)-20,043,638원]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25,456,36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5,456,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을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압류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5,456,3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5,456,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가액배상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에 대한 연 5%의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